

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사항

(제9편 추가설비)

2019. 12.



(사)한국선급

2020.01.01.일자 시행사항

(1) 건조계약일 또는 인증신청일 기준

◎ IACS UR M35(Rev.8 Jan 2019) 및 M36(Rev.6 Dec 2018) 개정사항 반영

- 크랭크케이스 내의 높은 오일미스트 농도에 대한 경보를 오일미스트 감지장치의 작동 또는 베어링 윤활유 출구 온도나 베어링 온도 감시 장치의 작동에 대한 경보로 개정함.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자동화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- 제 2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주추진기관 등의 집중감시제어설비</p> <p>301. - 304. <생략></p> <p>305. 주추진기관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의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【지침 참조】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- 4. <생략></p> <p>표 9.3.1 크로스헤드형 디젤 주기관 <i>(2017)</i></p> <p>표 9.3.2 트렁크 피스톤형 디젤 주기관 <i>(2017)</i></p> <p>306. <생략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자동화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- 제 2 절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주추진기관 등의 집중감시제어설비</p> <p>301. - 304. <현행과 동일></p> <p>305. 주추진기관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의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【지침 참조】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- 4. <현행과 동일></p> <p>표 9.3.1 크로스헤드형 디젤 주기관 <i>(2017)(2020)</i></p> <p>표 9.3.2 트렁크 피스톤형 디젤 주기관 <i>(2017)(2020)</i></p> <p>306. <현행과 동일></p>

<개정안>

표 9.3.1 크로스헤드형 디젤 주기관 (2017)(2020)

계통	감시 파라미터 [H=고 L=저 O=이상상태]	경보 작동	원격 표시 *	경보, 자동 감속	경보, 예비 펌프의 자동 시동	경보, 자동 긴급 정지	비고 [● = 적용]
감지기	공통 또는 분리	c	c	c	s	s	c: 공통(common) s: 분리(separate)
윤활유	크랭크케이스 내 오일머스트 농도 -H 또는 주베어링, 크랭크베어링 및 크로스헤드베어링 온도(또는 베어링 윤활유 출구 온도) H 오일머스트 감지장치 작동 (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온도 감시 시스템 또는 동등한 장치 작동 - 해당 기관의 주베어링, 크랭크베어링 및 크로스헤드베어링 윤활유 출구 온도, 또는 - 해당 기관의 주베어링, 크랭크베어링 및 크로스헤드베어링)	H O	●	●			연속최대출력이 2,250 kW 이상 또는 실린더안지름이 300 mm를 초과하는 기관에 적용함. ⁽¹⁾

<개정안>

표 9.3.2 트럭 피스톤형 디젤 주기관 (2017)(2020)

계통	감시 파라미터 [H=고 L=저 O=이상상태]	경보 작동	원격 표시 *	경보, 자동 감속	경보, 예비 펌프의 자동 시동	경보, 자동 긴급 정지	비고 [●=적용]
감지기	공통 또는 분리	c	c	c	s	s	c: 공통(common) s: 분리(separate)
윤활유	<p>크랭크케이스 내 오일미스트 농도 (H) 또는 주베어링과 연결봉 (connecting rod) 베어링 온도(또는 윤활유 출구온도)(H) 또는 동등한 장치</p> <p>오일미스트 감지장치 작동 (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온도 감시시스템 또는 동등한 장치 작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기관의 주베어링 및 크랭크베어링 윤활유 출구 온도, 또는 - 해당 기관의 주베어링 및 크랭크베어링) 	H O	●			●	<p>연속최대출력이 2,250 kW 이상 또는 실린더안 지름이 300 mm를 초과하는 기관에 적용함. 각 기관에 대해서, 경보 및 긴급정지용으로 2개의 독립출력을 갖는 오일미스트 감지기(혹은 기관 베어링 온도 감시시스템 또는 동등한 장치) 하나로 가능하다. ⁽¹⁾</p> <p>동등한 장치란 크랭크케이스 내의 폭발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해서 특수한 설계 특성을 가지는 고속기관에 적용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307. 발전장치의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1. - 2. <생략></p> <p>표 9.3.8 디젤 보조기관 및 보조터빈 <i>(2017)</i></p> <p>308. - 310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- 제 5 절 <생략></p>	<p>307. 발전장치의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1. - 2. <현행과 동일></p> <p>표 9.3.8 디젤 보조기관 및 보조터빈 <i>(2017)(2020)</i></p> <p>308. - 310.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- 제 5 절 <현행과 동일></p>

<개정안>

표 9.3.8 디젤 보조기관 및 보조터빈 (2017)(2020)

기관	계통	감시 파라미터 [H=고 L=저 O=이상상태]	경보 작동	원격 표시 *	경보, 예비 펌프의 자동 시동	경보, 자동 긴급 정지	비고 [● = 적용]
디젤 기관	윤활유	크랭크케이스 내 오일미스트 농도(H) 또는 주베어링과 연결봉(connecting rod) 베어링 온도(또는 윤활유 출구온도)(H) 또는 동등한 장치 오일미스트 감지장치 작동 (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온도 감시시스템 또는 동등한 장치 작동 - 해당 기관의 주베어링 및 크랭크베어링 윤활유 출구 온도, 또는 - 해당 기관의 주베어링 및 크랭크베어링)	H O	●		●	연속최대출력이 2,250 kW 이상 또는 실린더안지름이 300 mm 를 초과하는 기관에 적용함. 각 기관에 대해서, 경보 및 긴급정지용으로 2개의 독립출력을 갖는 오일미스트 감지기(혹은 기관 베어링 온도 감시시스템 또는 동등한 장치) 하나로 가능하다. ⁽¹⁾ 동등한 장치란 크랭크케이스 내의 폭발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해서 특수한 설계 특성을 가지는 고속기관에 적용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.

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사항 (제9편 추가설비)

Dec. 2019



KR

2020.01.01.일자 시행사항

(건조계약일 기준)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자동화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자동화설비의 검사</p> <p>201. 일반사항</p> <p>1. 검사의 준비 등 【규칙 참조】 규칙 201.의 3항 (1)을 적용함에 있어서 “우리 선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”이라 함은 <u>지침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02. <생략></p> <p>203. 공장시험</p> <p>1. <생략></p> <p>2. 자동화시스템의 완성시험 【규칙 참조】 규칙 203.의 2항 (1)의 (마)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”이라 함은 <u>지침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04. - 208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주추진기관 등의 집중감시제어설비</p> <p>302. 시스템 설계</p> <p>1. 제어시스템 【규칙 참조】 규칙 302.의 4항 (7)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우리 선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방법”이라 함은 <u>지침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<생략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자동화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자동화설비의 검사</p> <p>201. 일반사항</p> <p>1. 검사의 준비 등 【규칙 참조】 규칙 201.의 3항 (1)을 적용함에 있어서 “우리 선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”이라 함은 <u>규칙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02. <현행과 동일></p> <p>203. 공장시험</p> <p>1. <현행과 동일></p> <p>2. 자동화시스템의 완성시험 【규칙 참조】 규칙 203.의 2항 (1)의 (마)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”이라 함은 <u>규칙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04. - 208.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주추진기관 등의 집중감시제어설비</p> <p>302. 시스템 설계</p> <p>1. 제어시스템 【규칙 참조】 규칙 302.의 4항 (7)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우리 선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방법”이라 함은 <u>규칙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<현행과 동일></p>

현행	개정안
<p>303. - 305. <생략></p> <p>306. 보일러의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</p> <p>1. 일반사항 【규칙 참조】 규칙 306.의 1항 (3)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우리 선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”라 함은 <u>지침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자동연소제어장치</p> <p>(1) <u>규칙 306.의 2항 (2)호 (바)</u>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우리 선급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”이라 함은 <u>지침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 【규칙 참조】</p> <p>(2) <u>규칙 306.의 2항 (4)호</u>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”라 함은 <u>지침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 【규칙 참조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5 절 제자동화설비</p> <p>502. 제1종 자동화설비</p> <p>1. - 2. <생략></p> <p>3. 자동조타장치 【규칙 참조】 규칙 502.의 2항 (11)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”이라 함은 <u>지침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4. - 7. <생략></p> <p>503. - 504. <생략></p>	<p>303. - 305. <현행과 동일></p> <p>306. 보일러의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</p> <p>1. 일반사항 【규칙 참조】 규칙 306.의 1항 (3)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우리 선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”라 함은 <u>규칙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자동연소제어장치</p> <p>(1) <u>규칙 306.의 2항 (2)호 (바)</u>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우리 선급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”이라 함은 <u>규칙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 【규칙 참조】</p> <p>(2) <u>규칙 306.의 2항 (4)호</u>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”라 함은 <u>규칙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 【규칙 참조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5 절 제자동화설비</p> <p>502. 제1종 자동화설비</p> <p>1. - 2. <현행과 동일></p> <p>3. 자동조타장치 【규칙 참조】 규칙 502.의 2항 (11)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”이라 함은 <u>규칙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4. - 7. <현행과 동일></p> <p>503. - 504. <현행과 동일>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5 장 항해선교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항해선교설비의 검사</p> <p>202. 등록검사</p> <p>1. 제출도면 및 자료 【규칙 참조】 규칙 202.의 1항 (1)호 (마)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”라 함은 <u>지침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제조공장 등에 있어서의 시험 【규칙 참조】 규칙 202.의 2항 (차)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기”라 함은 <u>지침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03. 등록유지검사</p> <p>1. 연차검사 【규칙 참조】 규칙 203.의 2항 (1)호 (나)의 (f)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기”라 함은 <u>지침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5 장 항해선교설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항해선교설비의 검사</p> <p>202. 등록검사</p> <p>1. 제출도면 및 자료 【규칙 참조】 규칙 202.의 1항 (1)호 (마)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”라 함은 <u>규칙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제조공장 등에 있어서의 시험 【규칙 참조】 규칙 202.의 2항 (차)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기”라 함은 <u>규칙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03. 등록유지검사</p> <p>1. 연차검사 【규칙 참조】 규칙 203.의 2항 (1)호 (나)의 (f)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기”라 함은 <u>규칙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5 절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6 절 선교작업지원시스템</p> <p>602. 선교작업지원시스템</p> <p>1. <생략></p> <p>2. 선교정보 시스템 【규칙 참조】 규칙 602.의 2항 (마)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”이라 함은 <u>지침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3. <생략></p> <p>4. 자동추적장치(auto tracking system) 【규칙 참조】 규칙 602.의 4항 (사)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”이라 함은 <u>지침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5 절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6 절 선교작업지원시스템</p> <p>602. 선교작업지원시스템</p> <p>1. <현행과 동일></p> <p>2. 선교정보 시스템 【규칙 참조】 규칙 602.의 2항 (마)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”이라 함은 <u>규칙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3. <현행과 동일></p> <p>4. 자동추적장치(auto tracking system) 【규칙 참조】 규칙 602.의 4항 (사)를 적용함에 있어서 “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”이라 함은 <u>규칙 1편 1장 104. 또는 105.</u>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